

【 3 】 會議錄 署名議員 選任의 件

제의년월일 : 1995. 7. 11

제 의 자 : 의 장

제안이유

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.

주요골자

- . 회기중 의원발의 안건이 있으면 발의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.
- . 의원발의 안건이 없으면 선거구 순으로 2인씩 선임.

【 4 】 榕州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

제출년월일 : 1995. 6. 21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95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
변경된 내용 및 일부조항에 의거 양주군군세조례의법 적용 조항과 용어의 정의등을
일치시키기 위함.

주요골자

가. 지방세법 제26조는 취득세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과고지